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대상 확대 등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26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83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44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84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099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13호)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08호)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38호)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97호)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15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53호)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45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9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개 요	1
II. 검토의견	20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대상 확대 등(백선희의원안)	20
2. 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등(안상훈의원안)	28
3.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실시 등(강선우의원안 제41조의2 신설) ..	35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강선우의원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42
5.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자율성 강화(정부안)	48
6.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 연장(박덕흠의원안)	52
7. 금지행위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등 정신적 위해 행위’ 추가(김영호의원안) ...	59
8. 아동의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아동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마련(최은석의원안)	68
9.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관련 실태조사(서지영의원안)	83
10.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김민석의원안) ...	89
11.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강화 등(강선우의원안 제15조의B 등)	96
12. 장애아동 보호조치 등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최보운의원안 및 서영석의원안)	111
※ 참고자료	140

I. 개요

1.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5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2. 27.
- (3) 회 부 일 : 2025. 2.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

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2.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68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6.

(3) 회 부 일 : 2025. 3.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에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 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공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었음.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민간 기관 및 단체들과 유사한 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는 등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 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아동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3.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7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10.

(3) 회 부 일 : 2025. 3.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4.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78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11.

(3) 회 부 일 : 2025. 3.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 조제3항 신설 등).

5.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099호)

가. 제출경위

- (1) 제 출 자 : 정부
- (2) 제 출 일 : 2025. 3. 19.
- (3) 회 부 일 : 2025. 3.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2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

7.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50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4. 1.
- (3) 회 부 일 : 2025. 4.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산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산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회, 시위 중 확산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8.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73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나. 제안이유

사회적 경쟁 심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에 따른 청년층의 비관적 미래 인식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성년(19세 미만) 이전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보호자도 해당 계좌에 최대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형식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함(안 제4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나.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매월 20만원을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 등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 (중도인출 가능 사유)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아동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적립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정부적립금을 환수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마.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9.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79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4. 14.
- (3) 회 부 일 : 2025. 4.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10.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81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5.

(3) 회 부 일 : 2025. 4.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 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1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85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4. 15.

(3) 회 부 일 : 2025. 4.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되는 비율이 높는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12. 최보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34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5. 2.

(3) 회 부 일 : 2025. 5. 7.

나. 제안이유

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2제2항 후단 신설).

마.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바.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통계 및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

13.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19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1.

(3) 회 부 일 : 2025. 7. 2.

나. 제안이유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후단 신설).
- 나)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 마)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

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시 아동학대피해장애아동 현황과 장애아동학대 사례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II. 검토의견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대상 확대 등(백선희의원안 제29조의9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은 채용 시 의무적으로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공공기관</u>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u>장</u> 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 ----- ----- <u>공공기관</u> ,----- ----- <u>장</u> 과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u>장</u> 은----- ----- ----- -----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29조의9(아동관련기관 취업자의 심리검사 등) 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u>

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채용 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항목, 절차, 실시 방법, 시기·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먼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과 관련하여 보면, 현행법상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¹⁾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적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25년 예산은 4억 600만원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 ④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2025. 1. 1. 현재 한국은행 등 1,491개 기관)

- 한편,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발생 장소 >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20,659	(80.3)
	학대행위자 가정 내	677	(2.6)
소계		21,336	(82.9)
집근처 또는 길가		1,809	(7.0)
친척집		161	(0.6)
이웃집		55	(0.2)
어린이집		382	(1.5)
유치원		62	(0.2)
학교		889	(3.5)
학원		250	(1.0)
병원		40	(0.2)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54	(0.6)
	기타복지시설	55	(0.2)
숙박업소		129	(0.5)
종교시설		27	(0.1)
기타		390	(1.5)
계		25,739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²⁾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이 아동과의 밀접한 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사전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바, 현재 선택적으로 아동

2) 2024년 취업제한점검대상 기준으로 전국 404,770개소, 운영자·종사자 2,856,888명에 달함.

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과 같이 의무적 실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³⁾.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6.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 17. (생략)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 27. (생략)

□ 다만, 현행 「아동복지법」(제26조제1항4))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가 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 3)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나 추가재정소요 추계 시 필요한 정보, 즉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수강자 현황(구체적으로 설정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수, 종사자 대상범위 등), 기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신청하여 수강한 대상에 대한 정보, 해당 교육의 횟수 및 시간 등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 4)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적용대상 및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비교 >

개정안 적용 대상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관련기관의 장 ·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한정),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 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 <u>긴급전화센터</u>,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u>육아종합지원센터</u> 및 <u>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u>, 유치원 · 의료기관(의료인 한정) ·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u>청소년 보호·재활센터</u>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 <u>초·중·고, 특수학교,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u>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및 교습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u>아동보호전문기관</u>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법인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u>아동인권, 아동복지 사업 수행 비영리법인</u> (대표자 및 아동 직접 대면 업무에 종사자)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입양기관 · <u>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자 모집 또는 채용 기관</u>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자 한정) · <u>산후조리원</u>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 수행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고, 특수학교 등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다음, 아동관련기관 취업자 등에 대한 정기적 심리검사 실시와 관련된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 등은 취업 시

심리검사 결과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취업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9조의9 신설).

□ 아동의 경우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성인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의 심리건강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관련 사업(2025년 예산 기준 17억 4,3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의 정기적 심리검사 관련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⁵⁾.

□ 다만, 금번 개정안은 초·중등학교(교육부), 소년원(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들 기관의 의견도 심사 과정에 청취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개정으로 인해 정신계통 질환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는 없는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확대를 통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채용 시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

5) 한편 개정안에 따라 심리검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수, 심리검사의 구성 및 내용,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등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정신 계통 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인식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관장이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사자의 심리적·정신적 건강 관리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종사자에게 검사를 강제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등(안상훈의원안 제10조의2)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u>아동권리보장원</u> 의 설립 및 운영) ① <u>보건복지부장관</u> 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u>아동권리보장원</u> (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의2(<u>국가아동권리보장원</u> 의 설립 및 운영) ① <u>국가는</u> ----- ----- ----- ----- ----- <u>국가아동권리보장원</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보건복지부장관</u> 은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u>비용</u> 을 지원할 수 있다.	⑤ <u>국가는</u> ----- ----- <u>경비를 보조 또는</u> <u>출연할 수 있다.</u>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먼저, 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법」은 2019. 1. 15. 개정(2019. 7. 16. 시행)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 업무, 입양, 조사 및 통계 구축, 교육 및 홍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6)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7)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6)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그간 아동학대 관련 업무, 입양 관련한 업무는 민간 기관들이 주로 수행⁸⁾하여 왔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상담 업무도 민간 단체⁹⁾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던바, 아동권리보장원도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보다는 다양한 아동복지 관련 사업 수행의 한 주체로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023. 10. 31. 제정, 2024. 7. 19. 시행)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¹⁰⁾, 아동의 출생 증서 영구보존¹¹⁾ 등 업무를 수행하고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7)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8) 아동학대 관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문영희,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현황과 역할 및 발전 방향」, 『아동보호연구』 제4권 제2호, 2019. 12.; 입양 관련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안문희, 『입양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 9)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및 지역상담기관 등

-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 ④ (생략)

- 1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있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¹²⁾」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5. 7. 19.)으로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¹³⁾과 국제입양 관리권한¹⁴⁾을 부여받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 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유사 단체 명칭에는 ‘한국’을 사용하고 있음.

□ 다음,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비용 지원의 구체화와 관련된 것으로,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용 지원을 보조금으로 하는지, 출연금으로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이후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¹⁵⁾.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2) 2023. 7. 1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2025. 7. 19. 시행

1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1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 운영지원 예산현황(민간경상보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	25,739	26,427	28,038
인건비	9,438	9,806	10,679
관리운영비	3,713	3,865	4,165
고유사업비	12,588	12,756	13,194
1) 아동정책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	1,692	1,592	3,665.8
가. 아동권리 증진 및 인식개선	502	502	502
나. 아동정책 개발지원	1,190	1,090	1,090
다.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		2,073.8
2) 공공아동보호체계 지원	2,977	3,819	4,247
가.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616	816	806
나. 입양정책지원	2,361	3,003	3,441
3) 아동돌봄 및 자립지원	2,896	2,841	2,662.2
가. 마을돌봄서비스 지원	1,503	1,708	1,708
나.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39	239	239
다. 아동자립지원	1,154	894	715.2
4) 아동학대 예방 및 실종아동 보호 지원	5,023	4,504	2,619
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4,077	3,628	1,743
나.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946	876	876

* (위탁사업)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564백만원),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1,140백만원)

□ 개정안은 현행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명시화함과 아울러, 출연금 형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출연금과 보조금 비교 >

구분	출연금	보조금
법적 근거	일반법적 근거는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는 개별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국가재정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개별 법률의 지원근거와 관계없이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가능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출연금 이외의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출연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사용 가능함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함

* 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p.476.

- 참고로, 한국한의학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등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보조금 또는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기관 지원 형식 >

기관명		지원유형 유무		법적근거
		보조금	출연금	
1	국립암센터	○	○	암관리법 제36조(재원),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2	국립중앙의료원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원),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3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4	한국한의학진흥원	○	○	한의학육성법 제13조(한국한의학진흥원)
5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지정 등)제3항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7조(출연금)
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1조(출연금)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1조(재원), 제12조(출연금)
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5조(재원)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원)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공공성 강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국제아동협약 이행 지원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 명칭에 ‘국가’를 추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아동정책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 전환¹⁶⁾ 등에 대하여는 실익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공공성 강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국제아동협약 이행 지원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 명칭에 ‘국가’를 추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아동정책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 전환 등에 대하여는 실익 등에 대하여 논의 필요
기획재정부	이미 「아동복지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중이므로, 추가 지원근거 신설 필요성은 적음.
아동권리보장원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입양체계 개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보장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국가’ 명칭 부여를 통해 아동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공식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정적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민간보조)에 더하여 출연금의 지원 근거 명확화 필요

16)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재 국고보조금 외 별도 수입액이 없으므로, 출연금 100% 계상이 필요함.

3.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실시 등(강선우의원안 제41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초·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41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등)</u>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u>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
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
과용도서와 위탁보호 종료 또
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
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보호대상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아오다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서, 보호종료 아동의 수는 8,586명으로, 2020년 2,368명, 2021년 2,102명, 2022년 1,740명, 2023년 1,173명, 2024년 1,203명임.

< 연도별 보호종료 아동 현황 >

(단위: 명)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24년	1,203명	514명	157명	532명
2023년	1,173명	581명	146명	446명
2022년	1,740명	717명	124명	899명
2021년	2,102명	726명	157명	1,219명
2020년	2,368명	827명	168명	1,373명

* 자료 : 보건복지부

-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을 향한 사회적 편견이 종종 문제가 되는바¹⁷⁾, 부정적 선입견이 이들이 학교나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행동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는 결국 이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립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의

17) 김미영·최정숙,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의 자립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적 기업 (주) 브라더스키피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pp.16~17.; 연합뉴스, “실수하면 ‘보육원 출신’ 지적…차별로 속내 털어놓기 어려워”, 2022. 8. 28. 기사; 아름다운재단 보도자료, “드라마에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2020. 9. 21.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함.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

계	취업 정보, 자격 부족	직장 내 인간 관계의 어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긴급한 도움청할 곳 부족	돈 관리 지식 부족	사회적 편견	필요한 돈의 부족	외로움, 심리적 부담	기타
100	17.9	5.8	26.9	3.4	4.1	3.7	7.2	0.8	23.2	6.2	0.8

*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킴으로써 이들의 건강하고 안정적 자립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과정에 불필요한 편견과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된 내용으로 교육 또는 홍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교과용도서에도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용도서의 내용 및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등의 규정 사항¹⁸⁾인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등과의

18)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협의도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참고자료 1 참조).

-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 19)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 ⑪ (생략)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장애 공감 주간 운영	기간	2022. 11. 22~12. 12	2023. 11. 22 ~ 12. 14	2024. 11. 25~12. 6
	주제	배리어프리 자막 삽입	함께 놀랍	공감
	방법	뉴미디어 캠페인 실시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개최	뉴미디어 캠페인 실시 국민 참여 초청 관광, 문화 체험 실시	뉴미디어 캠페인 실시 장애공감페스티벌 개최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제작 의도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1cm 높이의 배리어 프리 자막 혹은 대체 텍스트 자막 삽입 콘텐츠를 인지도 높은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자이언트 팽 등)와 협업 · 콘텐츠 20종 노출 총 15,554,175회	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콘텐츠를 EBS,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와 협업 ② 공익광고 제작 · ‘육체는 겉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혼이다’라는 이소룡의 명대사를 수어로 무술처럼 구사하는 농인 배우를 통해 장애를 당당하고 멋지게 표현 노출 총 2,860,000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브이로그 등) 제작하여 장 애공감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사 회 전반에 노출 · 콘텐츠 31종 노출 총 12,563,934회
	광고 매체	EBS 1TV,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뉴미디어	KBS,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뉴미디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뉴미디어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41억 2,400만원(연평균 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 주도의 인식개선사업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오히려 특별한 도움·보호·배려 또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 효과 유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교과용 도서 내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 포함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공공 주도의 인식개선 사업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오히려 특별한 도움·보호·배려 또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 효과 유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교과용 도서 내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 포함 관련하여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 필요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학습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외 학습 요소로 우선 포함되어야 하며,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관장
아동권리보장원	개선이 필요한 ‘인식’의 정의와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보호대상 아동을 특정하여, 특히 동일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홍보와 교육이 오히려 불필요한 편견과 낙인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교과용도서에 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과용도서에 포함하는 등 방식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 필요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강선우의원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② (생략)	제38조(자립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등과 제3항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등에-----.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③ (생략)

- 자립정착금은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²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모두에게 지급²¹⁾되는 것임.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서는 자립정착금이 식비(28.9%), 주거관리비(27.7%), 저축·보험(9.7%), 교육(9.0%) 순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후 어려움은 주거 문제 26.9%, 경제 문제 23.2%, 취업 정보·기

20)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9605호, 2023. 8. 8. 개정, 2024. 2. 9. 시행)으로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나, 2024. 2. 9. 시행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함.

21) 보호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나, 지자체 판단 하에 지급이 가능함.

술·자격 부족 17.9%로, 보호종료 후 필요한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 (68.2%), 주거지원(20.2%)이었으며, 2023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취업자 비율은 52.4%로 20~29세 청년 고용률 63.4%에 비해 낮은 수준인 등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은 녹록치 않은 현실임.

< 자립정착금 개요 >

-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 (대상)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전체,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의 경우 만 18세가 된 때부터 신청 가능(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
-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 (지원내용)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05년 지방이양)
- (추진 경과)
 - (1993년) 아동복지사업으로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급 시작
* 자립정착금 100만원 지급(중앙보조율 50%, 지자체별 100~300만원으로 상이)
 - (2005년) 자립정착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2012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법적 근거규정 마련(제38조)
 - (2017년)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통해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등 과제를 포함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21. 7.), 자립수당·정착금 지급 근거 신설(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21.12.)
 - (2022년) '22년 1인당 자립정착금 최소 800만원 이상 권고
 - (2022년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통해 지자체 자립정착금 권고액 인상(800만원→1,000만원 이상)
 - * 지방재정 여건 및 예산 확보 준비 기간 고려, 2년('22-'23년)에 걸쳐 권고기준 단계적 상향('22년은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23년은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을 통하여 2017년 1인당 최소 500만원, 2022년에는 1인당 최소 800만원, 2023년 이후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한 바 있음.

< 2020 ~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

(단위: 만원)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500	500	1,000	1,500	2,000	2,000
부산	500	600	700	1,000	1,000	1,200
대구	500	500	800	1,000	1,000	1,000
인천	800	800	800	1,000	1,000	1,000
광주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전	500	500	800	1,500	1,500	1,500
울산	500	500	500	1,000	1,000	1,000
세종	500	500	500	800	1,000	1,000
경기	500	1,000	1,500	1,500	1,500	1,500
강원	500	500	500	1,000	1,000	1,000
충북	500	500	500	1,000	1,000	1,000
충남	500	500	500	1,000	1,000	1,000
전북	500	500	500	1,000	1,000	1,000
전남	500	500	1,000	1,000	1,000	1,000
경북	500	500	500	1,000	1,000	1,000
경남	500	500	500	1,000	1,200	1,500
제주	500	500	500	1,500	1,500	1,500

* 서울: 22년부터 2년에 걸쳐 500백만원씩 분할 지급

* 경기: 22년부터 2년에 걸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씩 분할 지급

□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급현황을 살펴 보면, 서울시는 2,000만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고, 경기도와 대전시, 경남과 제주도가 1,500만원, 부산은 1,200만원, 그 외 시·도는 권고 수준인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현재 모든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권고 금액인 1,000만원 이상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 편차가 있으며, 안정적인 자립 준비에 경제적인 문제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 이유 분석 >

(단위: 명, %)

자살생각이유	2023 (919)	2020 (1,552)
① 가정생활 문제(예: 가족간 갈등 등)	12.3	19.5
② 경제적인 문제(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28.7	33.4
③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예: 이성친구와의 헤어짐 등)	4.9	3.6
④ 가까운 사람의 죽음(예: 가족, 친한 친구 등)	5.0	5.1
⑤ 신체적 질병 문제(예: 만성질환 등)	2.0	1.6
⑥ 정신과적 문제(예: 우울증, 정신질환)	30.7	11.2
⑦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동료와의 문제 등)	4.9	4.0
⑧ 학대 또는 폭력 문제(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0.8	3.2
⑨ 알코올 등 중독 문제(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0.7	0.3
⑩ 학업, 취업 문제(성적, 시험, 진로 등)	7.3	6.5
⑪ 기타	2.8	11.5

자료: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 다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 이양된 사업이고, 재정여건 및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 금액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도 있겠음. 아울러, 지자체의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급액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될 필요가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하여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와 함께, 자립정착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립지원 대상자가 연령 및 퇴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적용례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자립지원 대상자’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자립정착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과 이행력이 중요하며, 자립정착금 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바꿀 경우 이러한 지방이양사업의 취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수용성과 이행력이 중요하며, 자립정착금 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바꿀 경우 이러한 지방이양사업의 취지가 저해될 우려
기획재정부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정착금은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이 필요한 사항임. 정부는 매년 자립준비청년 1인당 최소 정착금 기준을 지자체에 권고 중으로, 의무규정으로 바꿀 경우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현재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급 수준이 보건복지부의 권고(1인당 1,000만원 이상)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별도 의무규정 실익이 적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시·도간 자립정착금 격차 해소와 편차 없는 자립지원 환경 마련을 위한 하한선 설정 취지에 동의하나, 전국 어디나 균등한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하한 금액 설정 또는 변경 시 시·도 등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선행이 필요함. (안양시)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간 정착금 지원 격차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육시설 운영 등 위기아동 지원을 국가 사무로 환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할 경우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검토 요청

5.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자율성 강화(정부안 제44조의2제1항제6호)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u>보건복지부령으로</u>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6.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주도적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만 6세~12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2024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226개소가 설치·운영 중임²²⁾.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명)

센터수	이용아동		종사자 수
	정원	현원	
1,226개소	31,654명	30,317명	3,907명

자료: 보건복지부

22) 2017년 ‘다함께돌봄시범사업’ 10개소를 시작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 17개소, 2019년 173개소, 2020년 424개소, 2021년 694개소, 2022년 881개소, 2023년 1,048개소, 2024년 1,226개소가 설치·운영되었고, 2021년부터는 학교돌봄터도 설치·운영되었음(2021년 19개교 49실, 2022년 32개교 78실, 2023년 31개교 81실, 2024년 32개교 76실).

□ 현행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서는 보호, 프로그램, 상담 등 최소한의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여 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프로그램은 사전 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따르면, 돌봄 프로그램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여야 하며, 교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고,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진행 시 돌봄선생님(또는 센터장)이 아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돌봄 프로그램(예시) >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기본서비스	출결확인	출석과 결석 관련 사항 확인 입출입이 잦은 아동에 대한 출결 유의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인력 지원
	급·간식지원	- 급식 지원(방학) - 간식 지원	급·간식 업체 매식 또는 센터에서 조리 등 센터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공통 프로그램	놀이·휴식	- 자유활동 - 휴식 취하기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인력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 퇴직교사, 보호자 재능기부 등으로 운영 가능
	신체활동	- 신체놀이(줄넘기, 자전거, 배드민턴, 축구 등) - 도예·놀이·놀이터 만족놀이 안형극 등	
	숙제·독서지도	- 숙제 지도(알림장 확인, 숙제 확인) -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아동지원	- 일상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특별활동 프로그램	언어활동	- 기초외국어지도 - 외국어활동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과 돌봄 선생님 지원 (단, 특별활동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여야 함)
	예체능	- 예체능 활동지도 -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학	- 과학 지도(드론, 로봇, 과학 상자 등) - 과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 문화예술 체험 -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한편, 법제처는 2022년부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맞추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 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센터에서 제공할 구체적 돌봄 서비스의 유형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실정으로, 개정안과 같이 지자체가 조례로써 돌봄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 재원 투입 및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²³⁾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자체의 조례로 돌봄 서비스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지역별 편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23)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조례로 ‘방과 후 통학 서비스’를 추가로 규정하여 버스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 연장(박덕흠의원안 제38조제2항제3호)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생략)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 ----- <u>10년</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및 자산형성지원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
- 최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자립준비청년은 약 1,200명~2,400명으로, 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8,586명임.

< 자립준비청년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20	2,368	827	168	1,373
2021	2,102	726	157	1,219
2022	1,740	717	124	899
2023	1,173	581	146	446
2024	1,203	514	157	532
계	8,586	3,365	752	4,469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위탁가정·시설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고(제16조의3²⁴⁾), 보호종료 후 25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를 희망할 경우 대학 진학 준비 등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다시 하도록 규정(제16조의4²⁵⁾)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최대 29세까지 자립지원이 가능하게 되는데, 2024년 기준 보호연장아동은 총 5,729명에 이름.

24)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25)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 보호연장아동 현황 >

구분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서울	88	65	81	79	53	48	24	7
부산	239	187	166	147	105	69	58	15
대구	99	93	96	72	46	40	22	2
인천	91	80	85	47	57	36	25	1
광주	42	37	31	25	23	19	6	2
대전	54	35	41	23	17	30	11	3
울산	28	19	24	15	7	8	4	1
세종	112	51	42	34	32	26	17	5
경기	128	108	115	84	47	42	34	10
강원	9	6	3	3	2	3		
충북	22	19	14	13	9	7	10	4
충남	57	36	21	45	27	23	17	1
전북	111	95	92	69	70	36	24	4
전남	86	91	69	65	52	36	15	7
경북	32	24	31	19	14	8	10	2
경남	82	80	61	47	41	22	11	2
제주	61	43	50	42	24	15	15	5
합계	1,341	1,069	1,022	829	626	468	303	71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2.4%로, 20~29세 청년 고용률(61.3%)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15.8%로 20~29세 청년의 실업률(5.3%)보다 높아 이들이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녹록치 않은 현실임.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상태 >

(단위: %)

구분	계							미취업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상 용 직	임 시 직	일 용 직		
2023	100	52.4(100)	(95.6)	77.6	18.0	4.4	(4.4)	47.6
2020	100	42.2(100)	(94.4)	74.7	21.3	3.9	(5.6)	57.8

(단위: %)

구분	계	취업자(A)	미취업자			실업률 (B/(A+B))
				실업자(B)	비경제활동	
2023	100	52.4	47.6	9.9	37.8	15.8
2020	100	42.2	57.8	16.6	41.3	28.2

자료: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 후 거주할 집 문제(26.9%), 생활비·학비 등 돈의 부족(23.2%), 취업정보·자격 부족(17.9%), 외로움·심리적 부담(6.2%)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 개정안은 이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하여도 실질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특히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20대 후반의 연령에 이르러 자립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1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추가적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간 연장(2022. 6. 시행) 및 재보

26)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호조치(2024. 8. 시행) 도입으로 자립준비청년은 그 의사에 따라 최대 29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군 입대자의 경우 사후관리·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일시 중지 후 군 복무 종료 후 해당 기간 만큼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략)
--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간 연장보다는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27)에 따른 주거·

- 27)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생활·교육·취업·의료 등 자립준비청년 개별 역량·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제공이 필요하고, 자립수당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소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아동권리보장원도 법정 자립지원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청년 지원 체계 아래에서 취업·교육 등을 지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지자체 중에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본인 의사에 따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²⁸⁾이 나뉨.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8) (경기도) 18세에 달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호 연장 가능하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현행 법령 유지 필요 (대전광역시) 현행법상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고 자립지원기간 연장 시 자립 의지 감소 등 부작용 우려 (부산 금정구·강서구) 20대 후반까지 자립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0년으로 자립지원 연장 시 복지 의존성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충북 옥천군, 단양군) 보호종료아동 보호 기간 연장 시 자립준비청년의 의존성 증가, 형평성 등의 문제 우려 (경기 안양시) 보호 연장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필요 (경기 이천시)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립지원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립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참고] 소요예산 추계(보건복지부)²⁹⁾

- (대상자 추계) '25년 기준 '15년~'19년 보호종료 및 퇴소 아동이 지원 대상 포함
 - '17~'19년까지 보호종료 또는 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을 고려할 때, 5년 기준 약 13,000여 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1,000여명 수준으로 확대 예상

* 현황) 2,593명('17) → 2,606명('18) → 2,587명('19)

- (예산 추계) 자립준비청년 수가 증가함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직접비)과 함께 자립지원전담기관 인건비·운영비(간접비) 등 추가 지원 필요
 - (자립수당) 대상인원 증가분 반영 시, '25년 예산안 36,283백만원 대비 추가 48,137백만원 필요

- (서울) 3150*명 × 50만원 × 12개월 × 50% = 9,450백만원
- (지역) 17850명 × 50만원 × 12개월 × 70% = 74,970백만원

※ 보호종료 당시 서울소재 자립준비청년 15% 가정

- (전담기관 인건비 등) 적정 인력배치(1인당 대상자 30~40명)를 고려할 때, 전국 17개 시도 내 520명(+290명) 까지 자립지원전담인력 등 확대가 필요하여 '25년 예산안 6,216백만원 대비 추가 3,932백만원)

('25년 예산안 기준)

- (서울) 36명 × 336.8만원 × 12개월 × 50% + 42명 × 336.8만원 × 6개월 × 50% = 1151.9백만원
- (지역) 194명 × 336.8만원 × 12개월 × 70% + 248명 × 336.8만원 × 6개월 × 70% = 8996.6백만원

※ 보호종료 당시 서울소재 자립준비청년 15% 가정

* 자료: 보건복지부

29)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지원 대상의 기준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호 종료 및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의 규모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현 시점에서 20대 중·후반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신규 사업 계획 및 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및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7. 금지행위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등 정신적 위해 행위’ 추가(김영호의원안 제17조제12호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략) <u><신설></u>	제17조(금지 행위)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아동복지시설,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음향장치·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u>

	<u>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u>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제71조(벌칙) ① -----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
라 처벌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호</u>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4. <u>제9호 또는 제12호</u> -----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 매매, 음란행위 매개, 신체적 학대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 규정은 제정 당시부터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³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금지행위인 만큼, 시기나 장소에 관계없이

30) 「아동복지법」 (1961. 12. 30. 제정) 제1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2. 아동에게 걸식을 시키거나 또는 아동을 이용하여 걸식하는 행위
3.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4.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6. 음행을 매개 시키는 행위
7. 정당한 직업소개기관 이외의 자가 아동의 교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8.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9.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또는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10.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보편적으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한편, 최근 학생들이 확성기로 인한 소음, 욕설 등으로 등하교 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³¹⁾, 이는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³²⁾.

□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에 “아동복지시설³³⁾, 학교³⁴⁾, 유치원³⁵⁾, 어린이집³⁶⁾, 어린이 보호구역³⁷⁾”에서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³⁸⁾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육 또는 교육

31) 2025. 3. 14. 「탄핵 임박에 현재 인근 학교 비상...학교 운영도 축소」, EBS 뉴스

32) 2022. 12월에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어린이집 근처에서 확성기를 설치하고 반복적 욕설 등을 사용하여 열린 집회에 대하여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가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욕설시위 중단’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음(2022. 12. 13. 이데일리 기사, “어떤 자유도 아동의 보육·교육 권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기사 참조)

3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3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5)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7)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8) 이는 금지행위 중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제9호)의 경우와 동일한 형을 부과하려는 것임.

공간 주변에서 행해지는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아동복지시설 등 현황 >

구분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소)	970	12,186	8,294	28,954	16,490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다만, 금지행위의 유형이 집회·시위에서의 행위인 만큼 집회·시위의 제한·금지 통고, 금지 장소,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생략)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 (생략)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생략)

②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나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관리자 등의 요청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 시설에 추가하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066호)」 등 3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 개정안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

	박덕흠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윤건영의원안
주요 내용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보호 요청 시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할 수 있는 경우 추가 (현행 제8조제5항제2호 :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추	1)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 시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할 수 있는
	신고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추	

	화·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추가	가하고,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	경우 추가 -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진동, 혐오표현 등을 통해 사회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최자의 준수사항 추가 - 성별·종교·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한 반복적 혐오표현 금지 -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 금지
--	---	---	---

□ 아울러 앞서 본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행위 금지 등 10가지 금지행위(제17조)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 정의된 아동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금지한 것으로 이해되나, 개정안의 내용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음.

<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정의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그 외,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면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 만큼 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정이 될 필요가 있지만, 개정안은 다중이 참여하는 시위 및 집회에서의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금지행위’는 아동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 시의 욕설·폭언과 성격이 다른 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회·시위에서 금지하여야 하는 행위는 집회·시위의 금지 장소,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처벌 대상인 폭언 등의 수준, 소리의 크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임 등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제한사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아동의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마련
(최은석의원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정부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략)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	6. 제44조의4-----

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 1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 5. ~ 7. (생 략) ④·⑤ (생 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 7.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4조의4----- -----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 ----- ----- ----- ----- -----
--	--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

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
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27.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신설>

2. ~ 2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절의2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제도

제44조의2(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아동(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8세 이상으로 하며, 18세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건전한 자산 형성을 통한 성인
으로 성장한 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에게 매월 1
0만원을 지원금(이하 “정부적립
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정부적립금은 해당 아동 명
의로 개설된 「조세특례제한
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 보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아동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에 적립금(이하
“보호자적립금”이라 한다)을 납

입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매 월 20만원으로 한다.

④ 아동은 적립금(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을 말하며, 운용수익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들은 적립금만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된 정부적립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신 설>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급 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정부적립금의 지급 결정, 정부적립금의 지급 시기,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사후관리, 권리보호, 시효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0조의 경우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은 “정부적립금”으로, “8세”는 “19세”로 본다.

⑧ 정부적립금의 지급, 및 중도인출 방식·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정부의 책무) 정부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생략) 제71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u><신설></u>	<u>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1. <u>건전하고 효율적인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u> 2. <u>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실시</u> 3. <u>그 밖에 아동의 경제적 자립 및 건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44조의4(다함께돌봄센터) (현행 제44조의2와 같음) 제7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적립금을 지급받은 자</u> 제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수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u>
---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⑤ <u>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수당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⑥ ----- 제5항----- ----- ----- ----- ----- ----- ----- ----- -----.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국가와 지자체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42조³⁹⁾를 근거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을 ①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전문치료기관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②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③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음⁴⁰⁾.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아동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 2024년부터 중위소득 50%이하 수급 가구 아동으로 확대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 해도 계속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39)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동 사업의 지원 방식을 살펴 보면,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5만원 범위 내, 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하면 국가 및 지자체⁴¹⁾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아동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대상 아동, 정부 적립금, 매칭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왔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내역 >

연도	구분	기존	확대
2011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2017	지원금 확대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만원으로 확대
2018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7세로 확대
2020	지원금 확대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으로 확대
2022	매칭 비율 확대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1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2
2024	대상 확대 소득 기준 완화	① 기초수급아동 연령 확대(12~17세) ② 소득 기준 (생계·의료 급여)	① 기초수급아동 연령 확대(0~17세) ② 소득 기준 완화 (생계·의료 + 주거·교육 급여)
2025	대상확대	① 보호대상아동 ② 기초수급아동 연령(0~17세) 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예산 또한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2023년 730억→ 2024년 1,826억→ 2025년 2,313억원으로 증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빈곤 상태를 예방하고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국가가 아동의 자산 축적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저출생 현상의 대응책으로서 19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임.

41) 지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율은 서울 40%, 지방 70%에서 2025년도 예산에서는 서울 30%, 지방 70%로 조정되었음.

- 특히 개정안은 현행 아동과 정부의 적립금 매칭 방식이 아닌 정부 직접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자가 저축 여력이 없거나 적립을 적게 할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일정 부분의 자산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첫째, 개정안에서는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존치시키면서 별도의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동일 취지의 사업을 중복 규정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임.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에 통합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둘째, 개정안에서는 정부적립금 지급 대상 아동을 8세 이상부터 18세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나, 아동수당 지급 취지와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8세 미만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만, 저출생 대응책으로서 18세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셋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연 평균 5.4조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입에 따른 효과성 검토와 함께 정부적립금 지급 대상 등에 있어 합리적 개선점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억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안 제44조의2(아동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지원)	57,564	55,605	53,730	51,702	49,068	267,670	53,534
안 제44조의3(정부의 책무: 강사 육성, 교육 등)	7	7	7	7	7	35	7
합 계	57,571	55,612	53,737	51,709	49,075	267,705	53,541

주: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매년 12개월 동안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우리 위원회에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동 사업 내에서 현행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부의 추가 적립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대체 하는 방식을 취하는 개정안(강선우의원안·이수진의의원안) 및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존치시키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자산형성지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안(임광현의원안)도 계류되어 있는바, 어떤 방식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인지에 관하여 법안 심사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체안 >

구분	강선우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사업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현행 사업과의 관계	현행 대체	
정부적립금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무)	월 20만원(임의)
보호자적립금	일정 금액 추가 적립 가능(한도 없음)	-
인출 가능 시점	18세 이후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불가(의료비 등 중도인출 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아동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 우 인출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직업교육·훈련비, 주거 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 아동 자 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취약계층 아동 추가 지원	보호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복지 설에 입소 중인 아동, 수급자 가 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가족을 돌보는 아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아 동에 대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립 가능	-

<별도의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안 >

구분	임광현의원안	본 개정안(최은석의원안)
사업명	우리아이자립펀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현행 사업과의 관계	현행 존치	현행 존치
정부적립금	월 10만원(의무)	월 20만원(임의)
보호자적립금	정부적립금 적립된 달에 한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금액(임의)
인출 가능 시점	18세 이후	19세 이후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불가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 가능)	임광현의원안과 동일
정부적립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및 결정 철회, 생사 불명 등	임광현의원안과 동일
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보험 회사, 은행, 채신관서, 신용협동조 합중앙회 등 -등록취소 및 가입자보호조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7항42)에 따른 신탁업자등
정부의 책무	사업자 평가,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지원, 아동 대상 교육 등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지원, 아동 대 상 교육 실시 등
기타	-	서류 미제출,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4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마련하려는 ‘아동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는 실질적으로 아동수당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2025년 7월 기준으로 8세~18세 인원 수 490만명으로 전제할 때 국비 연 5.9조원 상당의 막대한 재정소요 부담이 예상되는 반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서의 정책 효과성 및 목적성은 확실하지 않다고 보이며, 특히 개정안은 본인 기여에 따라 비례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월 납입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혜자의 자립 및 자산형성 의지의 저하가 우려되고,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제도(참고자료 2,3 참조)와의 관계, 효과성(참고자료 4), 재원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유사 제도와 비교 >

	공통점	차이점
아동수당	보편수당(0~7세, 누구나)	자산형성 방식 (19세 연령 도래까지 인출 불가)
아동발달지원계좌 (0~19세, 취약아동)	자산형성 지원 (성년 도래까지 인출 불가)	본인부담과 무관, 보편수당 (디딤씨앗통장: 본인1, 정부2 매칭 적립)

자료: 보건복지부

9. 아동학대보호 권고기준 준수 관련 실태조사 실시(서지영의원안 제29조의9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호 권고기준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9(아동학대보호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호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복지법」은 2023. 6. 13. 개정(2023. 12. 14. 시행)으로 제29조의 8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29조의8(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권리보장원)은 2018년 공동으로 “①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 사건 취재 시 언론이 준수해야 할 윤리를 지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을 지켜야 한다, ④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여 보도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5가지 원칙에 기반한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고⁴³⁾,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아동의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발표하여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및 미준수 보도에 대한 준수 권고를 실시⁴⁴⁾하고 있음.

43) 김여라,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25호, 2021. 4. 27.

44) '24년 전체 아동학대 보도 9,613건 중 권고기준 미준수 3,476건→ 주요 보도 103건 대상 준수 권고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주요내용 >

1. (아동 권익·인권) ❶ 아동 살해사건 명명(가족 동반자살 → 아동 살해 후 극단선택), ❷ 징계권 폐지(‘체벌’ 용어 사용안함) 반영, ❸ 피해 아동의 동의와 입장 반영
2. (2차 피해 예방) ❶ 개인정보보호, ▲ 인권 침해 및 편견 조장(국적, 가족 형태 등) 유의, ❷ 사건의 명명(아동 이름 활용한 ○○이 사건 등) 유의, ❸ 학대 정황 기술 유의
3. (사실 기반 보도) ❶ 균형 보도, ❷ 영상 보도 및 악성 제보 유의 등
4. (대응체계 안내) ❶ 학대 시 처벌규정, ❷ 의심사례 신고 및 상담 번호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⁴⁶⁾하고 있고,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에 대한 보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⁴⁷⁾하고 있음.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013. 3. 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⁴⁵⁾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①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발표대로 보도를 하거나, 취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등의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⁴⁸⁾.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언론의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권고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46)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 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송경재,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 배경 및 적용점」, 『2024 사건기자 세미나』, 2024. 11. 8.

□ 다만, 「장애인복지법」 49), 「노인복지법」 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1) 등의 법률에서도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언론기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가운데, 주기적 실태조사 제도 도입이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언론이 아동학대보도 관련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억원 (연 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⁵²⁾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아동학대보도 실태조사 (안 제29조의9)	50	-	-	50	-	100	20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4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0) 「노인복지법」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2)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보호 권고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고기준 미준수 보도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즉각적 대응이 우선될 필요가 있는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보호 권고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고기준 미준수 보도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즉각적 대응이 우선될 필요가 있는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아동 대상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도기준 및 준수여부 실태조사 관련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중복하여 제약할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 역시 수범자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권고기준 준수 여부 점검 수단으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한국방송협회	현행 제도상 방송심의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방송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에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요은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여, 취재원 비닉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우려하여 아동학대보호를 기피하는 등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10.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김민석의원안
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u>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신설></u> <u><신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u> <u>-----.</u> 1. <u>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 2. <u>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u> ③ ----- ----- -----.

1. (생 략) <u>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u> <u>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u> <u>니한 자</u> 1의3. ~ 4. (생 략) ④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1의3.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26조제3항),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제75조제3항제1호의2)하고 있음.

- 교육 실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임(「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및 별표 17).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26개 직군⁵³⁾에 이르는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2022년 34만 1,010개소(285만 7,765명), 2023년 32만 9,359개소(289만 3,990명)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이수율은 2022년 88.3%, 2023년 89.9%임.

- 참고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른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⁵⁴⁾의 이수율 2022년 99.1%, 2023년 99.4%보다 다소 낮은 수치임.

53) 1.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복지시설,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건강가정지원센터,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9.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0. 119구급대원, 11. 응급구조사,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13. 유치원, 14. 아동보호전문기관, 15. 의료기관,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수행자, 17.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8.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19.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2. 학원 및 교습소, 23. 아이돌보미, 24.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기관, 26. 한국보육진흥원

54)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유형별 통계를 살펴 보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또한 전체의 약 30% 안팎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직무 수행 시 아동학대 발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발견 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큰 것으로 보임.

□ 이에 교육 실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교육 실시를 더욱 강하게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최종 학대 판단건수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건수	42	43	40	50	44

* 자료: 보건복지부(「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유형별 신고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 의무자	8,836	10,973	23,372	16,149	12,553
	(23.0)	(28.2)	(44.9)	(36.3)	(27.4)
비신고의무자	29,544	27,956	28,711	28,382	33,218
	(77.0)	(71.8)	(55.1)	(63.7)	(72.6)
합 계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⁵⁵⁾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⁵⁶⁾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과 함께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⁵⁷⁾ 및 「장애인복지법」⁵⁸⁾에서는 교육 미실시에 부과되는

55)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56)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7)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

과태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 외, 다른 법률들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부과 되는 과태료 수준은 다음과 같음.

< 각종 교육 실시 의무 위반 과태료 입법례 >

법률명	교육내용	과태료
「철도안전법」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이하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00만원 이하
「선박평형수관리법」	선박소유자의 선박평형수관리 교육	200만원 이하
「광산안전법」	광업권자 등의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200만원 이하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생산업 영업자의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100만원 이하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3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은 법제처에서 행위유형별 과태료 금액 분포를 기준⁵⁹⁾으로 설정한 기준 금액에 부합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등은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에는 신중한

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5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최빈(最頻) 금액과 중위(中位) 금액을 고려하여 설정함.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행위유형별 기준금액 >

기준금액	위반행위 유형
5백만원	인허가, 신고, 보고, 행정상 명령, 조사, 계획, 강제보험, 보존, 통지, 인력배치, 인증, 검사, 표시, 그 밖의 행위유형
3백만원	유사명칭, <u>교육</u> , 게시, 토지출입

11.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강화 등(강선우의원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1) 지자체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장애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안 제15조의3제1항), (2)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 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며(안 제22조제6항제5호), (3)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입력·관리하는 경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4)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예방정책의 추진실태 및 평가결과와 사례분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 ----- -----제6호까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⑤ (생 략)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 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7. (생 략)

⑦ (생 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⑤ (생 략)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4. (현행과 같음)

5. -----

-----아동학대 예방·장애아동학대예방-----

6.·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피해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생략)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u>아동학대</u>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1. <u>아동학대 · 장애아동학대</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아동학대</u> 사례 분석	3. <u>아동학대 · 장애아동학대</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진 장애아동에게는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체계가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 2021년 12월 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 7만 7,961명 중 1,486명(1.91%)의 장애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1,928명(2.47%)의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함.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지자체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각각 대응하게 되는 등 장애아동 학대 피해의 체계적 처리나 관련 정보 연계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 >

(단위: 건)

구분	지방자치단체 (a)		장애인권익옹호기관 (b)		합계(a+b)	
	신고접수	학대판단	신고접수	학대판단	신고접수	학대판단
2021년	2,091	1,347	322	166	2,413	1,513
2022년	1,674	1,026	413	249	2,087	1,275
2023년	1,328	652	452	263	1,780	915

* (a)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b)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기준

* 2023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건 중 피해아동 분리보호가 불필요한 건 외에는 지자체에서 주대응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호조치 중인 장애아동에 대한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의 연계·사용 등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연계도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특히, 「아동복지법」 제4조제4항⁶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별도로 조항으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 참고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체계는 신고접수→ 학대조사 및 일시보호→ 학대판단 및 보호조치→ 사례관리로 이루어져 있고, 지자체·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협조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

보호단계	내용
신고접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아동 학대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통보하여 재신고·동일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학대조사 및 일시보호	학대조사는 사안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사전협조를 거쳐 경찰, 상호기관 간에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으며,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 관련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음.
학대판단 및 보호조치	학대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각각 학대 여부를 판단하되, 기관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분리보호 필요 시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사례관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로 판단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학대로 판단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피해회복 및 지원, 재학대 발생 여부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되, 필요 시 상호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먼저, 지자체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도 점검하도록 하려는 내용(안 제15조의3제1항)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서는 지자체장이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 중인 아동,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아동 중 보호조치 중인 아동 등의 양육상황을 매년

60)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점검하도록 하고(제1항),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지자체는 해당 근거 규정에 따라 매년 양육상황을 점검하였는데, 보호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는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양육상황 점검 시 보호대상아동의 적응 상태, 변화 정도,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 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립지원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자립 생활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게 됨⁶¹⁾.

< 양육상황 점검 개요 >

- **(목적)** 보호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 조치
- **(근거법률)**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 **(수행주체)**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부서 아동보호전담요원
- **(수행시기)** 분기별 점검 실시
- **(점검사항)**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아동별 보호·관리계획(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보호아동의 적응 수준 및 변화 정도, 아동의 욕구·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수정 필요성, 아동-원가정 간 면접교섭(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실시여부, 만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계획(아동복지법 제39조) 이행여부
- **(결과활용)** 점검 결과에 따라 욕구 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보호조치 변경(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 원가정 복귀 등 보호조치 종결여부 검토

□ 한편,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게 되는데⁶²⁾, 「아동복지법」상 양육상황 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61) 보건복지부,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204.

62)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는 아동복지시설에 임시보호 가능(보건복지부,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7.)

입소 중인 장애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에도 적응상태, 변화 정도 등을 살펴 보호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양육 상황 점검도 병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1,486명(1.91%)이 아동복지시설, 1,928명(2.47%)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함.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이 성인과 혼거하는 시설이 47.9%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학습 공간이 없는 시설이 29.8%에 이르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한편, 개정안을 반영하되, 현행법상 양육상황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⁶³⁾,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점검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적응 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대상이 장애 유무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장애아동

63) 「아동복지법」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음,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추가와 관련된 것임(안 제22조제6항제5호).

□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2조제6항⁶⁴⁾),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추진 중에 있음.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현황 >

- (교육)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운영
 -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아동학대 예방, 조사, 피해아동 지원,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관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관별·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을 접촉, 위기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26개 직군(의료인, 교사, 119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①아동학대 관련 법령, ②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교육
- (홍보)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목적
 - (주요 내용) '21.1월 민법 제915조(징계권)폐지를 계기로 기존의 체벌이 허용되는 문화를 대체하여 긍정적인 방식의 양육 문화 확산
 - (주요 성과) 연간 공익광고 3편 제작,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정부 기념식 운영, 부모 교육 리플릿 40만부 배포, 민관협업을 통해 긍정양육을 안내하는 제품 출시(우유, 물티슈, 아동음료 등), 카카오톡 긍정양육 이모티콘 배포,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홍보 포스터 게시, 긍정양육 129 원칙을 안내하는 각종 굿즈 제작·보급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64)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7. (생략)

□ 참고로, 2025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예산액은 280억 3,800만원으로, 이 중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 예산으로 17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장애아동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대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⁶⁵⁾. 다만, 「장애인 복지법」⁶⁶⁾상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이들 기관과 협업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업무

65)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확대될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6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 6. (생략)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 ⑤ (생략)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업무

□ 아울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746호)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계류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장애 등 아동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업무를 법률상 의무로 별도로 규정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교육·홍보 추진 시 장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음, 아동학대정보 입력·관리 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것(안 제28조의2제2항 후단 신설)으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⁶⁷⁾하고 있음.

67)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2023. 8. 8. 개정(2024. 2. 9. 시행)으로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⁶⁸⁾하였으나, 아동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아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에 한계가 있다고 보임.

<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장애인학대 대응 시스템 비교⁷¹⁾ >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장애인학대 대응 시스템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 ⁶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 ⁷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2호
주요기능	(주요서비스)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에 필요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처리 서비스 제공 및 실적 관리 (사건관리) 신고접수, 기초정보조사,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결과 등 (사례관리) 안전평가, 서비스계획, 서비스 제공, 사례점검, 사후관리, 심리치료 등 (통계자료)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 생산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업무 전반을 기록·관리, 신고자·피해자·행위자 정보 관리, 기초통계생산, 신고전화 관리
업무체계	- 사건관리(지자체, 행복e음) * 신고접수→ 사건담당자 지정→ 아동학대 조사→ 사례판단→ 조치관리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 사례전환 -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사례전환→ 사례담당자 지정→ 안전평가→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 사례점검→ 사후관리	- 신고접수→ 학대조사·사례판정 → 피해지원→ 사례종결→ 사후모니터링 - 대상자관리, 사례회의, 종사자교육, 예방 사업·자원관리, 통계 등

6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69)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등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 관한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신고접수, 학대조사, 사례 판단, 사후관리 단계의 정보 등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통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대응체계를 연계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아동학대는 행복e음, 장애인 학대는 민간 시스템에 기반하는 등 양 시스템의 상이한 특성에 따른 연계의 어려움, 예산 소요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아울러,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 시스템의 연계 범위 검토, 시스템 개선 필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임.

7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1)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장애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고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만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주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제로 포섭되고 있다고 설명함(「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 참고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345호 및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91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다음,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실태 및 평가결과’와 ‘장애아동학대 사례분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의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⁷²⁾하고 있음.

72)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차보고서 포함 내용(제65조제2항) >

-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 아동학대 사례 분석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재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항목별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여 작성되지는 않고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장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연차보고서(2023년도) 주요 내용>

-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아동학대 사례판단
 - 아동학대 사례 분석
-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 아동학대 사례분석
 -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 장애아동 통계⁷³⁾

□ 특히, 연차보고서 작성 내용 중 최소한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사례 분석 등 아동 정책상 특성별 대응이 중요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나아가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외에도 이주민,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에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해

73)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매년 작성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분석을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 장애아동 학대사례, 3) 노동력 착취사례,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5) 재학대사례로 나누어 집계한 것에서 ‘장애아동 학대사례’ 부분을 그대로 실는 것임.

보이는바, 현행법상(제65조의2제4항⁷⁴⁾)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내용별 대상아동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부측에 정책적 자율성을 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피해아동·아동학대는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아동학대를 포함하는 바 아동 특성에 따라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현행 법률상 작성 내용을 유지하면서 연차보고서 작성 시 장애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연차보고서를 ‘장애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도록 하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345호) 및 학대피해장애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및 장애아동학대 사례분석 내용을 추가하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91호)가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74)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장애아동 보호조치 등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최보윤의원안 및 서영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장애아동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각각의 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국가 등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각각의 안 제22조제1항제5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그 외, 서영석의원안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시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추가하고 있음(안 제15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현 행	최보윤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보호조치) ① -	제15조(보호조치) ① --
① 시·도지사	-----	-----
또는 시장·군	-----	-----
수·구청장은	-----	-----
그 관할 구역에	-----	-----
서 보호대상아	-----	-----
동을 발견하거	-----	-----
나 보호자의 의	-----	-----
뢰를 받은 때에	-----	-----

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 ----- ----- ----- ----- ----- ----- ----.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 ----- ---.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3. (생략)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	1. ~ 6.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에 적합한 아동 복지시설에 입 소시키는 것		----- ----- -----<u>것. 다만, 보</u> <u>호대상아동이 「장애</u> <u>인복지법」에 따른</u> <u>장애인인 경우에는</u> <u>같은 법 제58조에 따</u> <u>른 장애인복지시설에</u> <u>입소시킬 수 있다.</u>
5.·6.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 부터 제6호까지 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 하면 제5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u>아동일시보호시</u> <u>설 또는 제53조</u> <u>의2에 따른 학대</u> <u>피해아동쉼터에</u> 보호대상아동을	② ~ ⑪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u>아동일시보호시설, 제</u> <u>53조의2에 따른 학대</u> <u>피해아동쉼터 또는</u> <u>「장애인복지법」 제</u> <u>59조의13에 따른 피</u>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해장애아동 쉼터----

1. ~ 4. (생 략) ⑦ ~ ⑪ (생 략) 제15조의3(보호대 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5조의3(보호대상아 동의 양육상황 점검)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 의 양육상황 점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 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 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제16조의2(보호대 상아동의 사후 관리) (생 략) <u><신 설></u>	제16조의2(보호대상아 동의 사후관리)(현행 과 같음)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 의 사후관리) ① (현 행 제60조의2의2와 같음) <u>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보호대상아동의</u>

		<u>복지 증진을 위하여</u> <u>필요한 경우 제1항에</u> <u>따른 업무를 수행할</u> <u>때 「장애인복지법」</u> <u>제59조의11에 따른</u>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u>의 장애인에 지원을 요</u> <u>청할 수 있다. 이 경</u> <u>우 요청을 받은 장애</u> <u>인권익옹호기관의 장</u> <u>은 특별한 사유가 없</u> <u>으면 요청에 따라야</u> <u>한다.</u>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	5.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u>자 교육</u>	<u>교육</u>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피해아동 보호 계획의 수립 등) ① 시	제22조의4(피해아동 보호 계획의 수립 등) ①	제22조의4(피해아동 보호 계획의 수립 등) ① -
· 도지사 또는	-----	-----
시장·군수·구청장은	-----	-----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	-----
한 후 다음	-----	-----
각 호의 사항이	-----	-----
포함된 피해아	-----	-----
동 보호 계획(이하	-----	-----
“보호 계획”이라	-----	-----
한다)을	-----	-----
수립하고 그 계획	-----	-----
을 아동 보호	-----	-----
전문기관의 장	-----	-----
에게 통보하여야	-----	-----
한다. <후단	-----, 이 경우	-----, 이 경우
신설>	<u>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u>	<u>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u>
	<u>장애가 있거나 장애가</u>	<u>장애가 있거나 장애가</u>
	<u>있는 것으로 의심되는</u>	<u>있는 것으로 의심되는</u>
	<u>경우 장애인권익옹호</u>	<u>경우 장애인권익옹호</u>

	<u>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u><신설></u>	<u>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u> 5. <u>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계획. 다만,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 한한다.</u> 6. (현행 제4호와 같음)	<u>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u> 5. <u>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계획. 다만,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 한한다.</u> 6. (현행 제4호와 같음)
4. (생략) ② ~ ⑥ (생략)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생략)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 함한 피해아동 의 가족에게 필 요한 지원을 제 공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 ----- ----- ----- ----- -----.
		<u>이 경우 피해아동 또 는 해당 아동의 보호 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여야 한다.</u>
③ (생 략) 제28조의2(아동학대 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 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 기 위하여 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 위자에 관한 정 보와 아동학대	제28조의2(아동 학대 정 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 의 관리 및 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장
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
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illegible]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 설></u>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	--	--

7. (생 략) ④ · ⑤ (생 략)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u>피해아동</u> 현황 및 보호 · 지원 현황 3. <u>아동학대</u> 사례 분석 4 · 5. (생 략) ③ · ④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하며,</u> <u>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u>피해아동 · 피해장애아동</u>----- 3. <u>아동학대 · 장애아동학대</u>----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진 장애아동에게는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체계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 2021년 12월 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 7만 7,961명 중 1,486명(1.91%)의 장애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1,928명(2.47%)의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함.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지자체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각각 대응하게 되는 등 장애아동 학대 피해의 체계적 처리나 관련 정보 연계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 >

(단위 : 건)

구분	지방자치단체 (a)		장애인권익옹호기관 (b)		합계(a+b)	
	신고접수	학대판단	신고접수	학대판단	신고접수	학대판단
2021년	2,091	1,347	322	166	2,413	1,513
2022년	1,674	1,026	413	249	2,087	1,275
2023년	1,328	652	452	263	1,780	915

* (a)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b)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기준

* 2023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건 중 피해아동 분리보호가 불필요한 건 외에는 지자체에서 주대응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절차 보완 및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 분리 기재 등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특히,

「아동복지법」 제4조제4항⁷⁵⁾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별도 조항으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 먼저 지자체장이 보호조치를 할 때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 청취와 관련된 것임 (각각의 개정안 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후단 각 신설).
- 참고로,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외에 19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2023년 12월말 기준 총 93명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관장 및 운영인력	행정인력	상담원
중앙		2	4	-
서울		2	-	9
부산		2	-	3
대구		2	-	5
인천		2	-	6
광주		2	-	5
대전		2	-	3
울산		2	-	5
세종		2	-	2
경기	경남부	2	-	9
	경북부	2	-	7
	소계	4	-	16
강원		2	-	5

75)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분		관장 및 운영인력	행정인력	상담원
충북	충북	2	-	4
	충북북부	2	-	3
	소계	4	-	7
충남		2	-	4
전북		2	-	4
전남		2	-	6
경북		2	-	3
경남		2	-	6
제주		2	-	4
계		40	4	93

* 2023년 12월말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93명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원은 5명으로 이중 관장 및 운영지원 직원을 제외한 3명이 상담원으로서 사례지원 업무를 담당함. 지역별로 상담원 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하였기 때문임.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참조)

*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은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바, 개정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이러한 전문인력의 의견을 활용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관련하여, 2021년 관계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이후 장애 아동 학대 조사·사례관리 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도 하였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④ (생략)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 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히 상기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 학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접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신고접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임.

□ 다만, 앞서 본 대로 현재 중앙을 제외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적으로 19개만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나 보호의 시급성 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의 상담 인력 현황과 아동이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 서영석의원안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조치 시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에 피해장애아동 쉽터를 추가하는 내용(안 제15조제6항 전단)이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음⁷⁶⁾.

<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현황 >

(단위: 명)

	보호대상 아동 수	보호조치 아동 수	장애 여부		보호조치 현황			
			장애	비장애	중장기보호조치		일시보호조치	
					시설입소 77)	가정보호 78)	시설	가정형보호
2020년	5,053	4,120	176	3,944	2,727	1,393	-	-
2021년	4,521	3,437	121	3,316	2,183	1,254	-	-
2022년	3,756	2,289	110	2,179	913	968	381	27
2023년	2,796	2,054	103	1,951	801	945	266	42
2024년	2,836	1,978	100	1,876	753	830	373	22

자료: 보건복지부, 공표용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24년 12월말기준)

76) 다만, '공표용' 자료에는 전체적인 장애 여부만 집계하고, 보호조치별로 장애/비장애를 나눈 현황은 제외되어 있음.

77)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로 나뉨.

78) 소년소녀가정, 입양대상, 가정위탁, 입양전위탁으로 나뉨.

□ 현재도 지자체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⁷⁹⁾로 가는 경우가 있는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중·장기 보호조치 아동 총 1,583명 중 474명(29.9%)은 아동양육시설로, 12명(0.8%)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입소한 것으로 파악됨.

□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장애아동의 특수성 및 아동에 적합한 피해회복 및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인 보호대상아동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이 성인과 혼거하는 시설이 47.9%, 개별학습 공간이 없는 시설 29.8%, 실외 놀이터 및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이 52.1%에 이르는 등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발달

7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 마련 -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 이행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 마련 -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후견인 지정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철저 - 종사자 인권교육에 아동 인권 관련 내용 포함 |
|---|

□ 아울러,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조치 시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제59조의13 제2항⁸⁰⁾)를 추가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현재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17개 시·도에 19개소(서울, 경기 각 2곳)가 입소정원 각 8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음, 서영석의원안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시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5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을 규정함.

□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종료 후 장애아동의 적응 상태, 적합한 서비스 제공 상태 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확대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지원도 있어야 하겠음.

8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음,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에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추가하려는 내용에 관한 것임(각각의 개정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의2)과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⁸¹⁾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으로 나뉘고,

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신고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생략)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특히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하여 공적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6호⁸²⁾ 및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⁸³⁾),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제2호⁸⁴⁾)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전체 아동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⁸⁵⁾, 필요한 경우 장애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와 협력하고 있으며, 아동은

8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3)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85) 다만,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제4항)고 명시하고 있음.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을 포괄하는 바,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만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 현행 규정에 따른 종사자 교육 등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 아동정보시스템 등에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바,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⁸⁶⁾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 8. (생략)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이원화된 체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⁸⁷⁾,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바⁸⁸⁾, 개정안은 학대피해

86)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87)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신분조회 등 조치, 사실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제2항), 아동학대이력과 장애인학대이력을 상호 조회할 수는 있음(「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88) 2024. 7. 29. 최보윤의원실 등 주최로 개최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이원화된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고, 2025. 4. 3.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최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10년」 좌담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아동 또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그 정보를 포함하는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유기적 정보 연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에는 아동복지시설·아동 보호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 아동학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는 바,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행위자에 대한 정보 등을 의미하며, 현재 학대피해아동 등⁸⁹⁾이 장애인이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 학대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시스템) 조회를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조사 중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

□ 다만,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장애 여부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사후 관리 규정(제28조)보다는 최보윤의원안과 같이 관련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리 규정(제28조의2)에서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 아동에 관한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각각의 개정안 제28조의2제3항 제7호부터 제9호 까지 신설)과 관련된 것임.

89)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행위자가 아닌 보호자는 시스템상으로 즉시 조회되는 것은 아니나, 보호계획의 수립, 사례관리에 있어 보호자의 장애는 중요한 특성이므로 조사 결과 등 입력 시 함께 입력 가능 - 등록되지 않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는 시스템상 조회되지는 않으나 특성을 표기할 수 있음)

□ 각 개정안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애인에게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 아동이 있을 경우 아동에 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통하여 개별 아동에게 각각 적합한 보호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각 시설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 시 고려할 여지가 있겠음.

< 각 시설별 역할 >

시설·기관명(근거)	시설·기관(장)의 역할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시설은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주간이용시설)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이용장애인에 대한 보건 및 안전관리 책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의료재활상담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등의 판매활동과 유통 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를 제공

시설·기관명(근거)	시설·기관(장)의 역할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제1항)	•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물며 보호받는 공간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에게 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제공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제2항)	•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물며 보호받는 공간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게 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제공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등 • (지역)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8조)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평가 및 운영지원,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9조)	•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장애아동 사례관리 등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 위기 발달장애인 보호 - 학대, 유기, 방임 자기 또는 타해 위험 등 위기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 일시 보호 - 위기여부 판단을 위한 초기상담 및 사례평가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애인에게 아동 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기 발달장애인센터의 장애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돌봄·지원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수 있으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중앙·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등은 그 기능상 관련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음,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2건의 개정안은 작성범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는바, 최보윤의원안이 더 포괄적임(각각의 개정안 제65조의2제2항).

최보윤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연차보고서의 각 항목별로 장애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에 대하여 각각 작성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연차보고서 항목 중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사례 분석’에 관하여 장애아동 관련 내용 추가

-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65조의2제1항).

< 연차보고서 포함 내용(제65조제2항) >

-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 아동학대 사례 분석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재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항목별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여 작성되지는 않고 있는바, 2건의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특성이 고려된 차별화되고 실효적인 장애아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연차보고서(2023년도) 주요 내용 >

-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아동학대 사례판단
 - 아동학대 사례 분석
 -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 아동학대 사례분석
 -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 장애아동 통계⁹⁰⁾

□ 특히 연차보고서 작성 내용 중 최소한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사례 분석 등 아동 정책상 특성별 대응이 중요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나아가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외에도 이주민,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에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현행법상(제65조의2제4항⁹¹⁾)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내용별 대상아동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부측에 정책적 자율성을 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피해아동·아동학대는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아동학대를 포함하는 바 아동 특성에 따라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현행 법률상 작성 내용을 유지하면서 연차보고서 작성 시 장애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90)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매년 작성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분석을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 장애아동 학대사례, 3) 노동력 착취사례,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5) 재학대사례로 나누어 집계한 것에서 ‘장애아동 학대사례’ 부분을 그대로 실는 것임.

91)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5

○ (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 (대상) 장애인복지법령 상 명시된 공직유관단체, 각 급 학교, 어린이집

구분(2023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총 개소수	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 기관	지방공사 ·공단	특수 법인	각 급 학교 (초, 중, 고, 특수, 대학, 기타)	유치원, 어린이집
47,781	1,107	979	347	160	6	12,531	32,651

○ (교육 실시기간) 2023. 1. 1. ~ 2023. 12. 31.

□ **보고점검체계**

- (교육 실시 대상) 국가, 지자체, 각 급 학교 등의 기관장, 직원, 학생
- (실적 보고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수행)
 - 보고수단: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직접 등록
- (부진기관 처리기준)
 - 교육실적 미입력, 실적배점 기준미달(70점 미만), 대면교육 미실시
- (교육실적 보고기간) 2023. 9. 1. ~ 2024. 4. 19.
 - 정규 보고기간: 2023. 9. 1. ~ 2024. 2. 29.(5개월)
 - 추가 보완기간: 2024. 3. 25. ~ 4. 19.(1개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보고기간) 2024. 7. 1. ~ 10. 31.
- (교육실적 점검기간) 2024. 2. ~ 11.

[참고 2]	각 부처가 시행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
---------------	-----------------------------

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방식	비고
국토부	교통피해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제도	자동차사고 사망· 중상해자의 미성년 자녀+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의 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 저축, 7만원까지 정부가 1:1 매칭 지원	'24.4월 기준 570명 참여
복지부	희망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목적으 로 저축 시, 월 10만원 한도 내 에서 매칭 지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1:3,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는 1:1 매칭	
	청년내일 저축 계좌	19~34세 기초수급·차상위	월 10만원까지 1:3 매칭 지원	
		19~34세 근로·사업소득 220만원 이하	월 10만원까지 1:1 매칭 지원	
금융위	청년 도약계좌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18~34세)	월 70만원까지 최대 6% 이자 지원	2년

[참고 3] 아동자산형성지원 관련 해외 사례

□ **싱가포르**

< 출처 : 주요국가 아동자산형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김상희의원 소규모연구용역 >

○ **아동 발달 계좌(Children development accounts)**

- 0~6세 기간 동안 운영하는 가족의 저축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저축 시 정부가 1:1 매칭금을 동일 계좌에 입금
- 해당 계좌의 돈은 0~6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초등학교에 입학 시 대학 교육 축진을 위한 계좌로 이전

* (사용 용도) 아동 돌봄, 취학 전 교육, 특별교육, 의료보험 등 관련 비용

□ **영국**

< 출처 : 청년 자산지원 관련 최근 국외 논의 동향(복지부, '21.6.14) >

○ **아동 신탁 기금(Child Trust Fund, '03~'11)**

- 젊은 성인의 유형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올바른 저축·투자 습관을 도모할 목적으로 '02.9월 이후 출생자 1인당 250파운드('25년 가치로 한화 약 45만원)의 비과세 '베이비 본드' 지급을 추진
- 7세에 250파운드를 추가 지급하며, 월 최대 100파운드까지 부모의 기여분에 대해 세제 혜택 제공(연 1,200파운드 상한)
- '20.9.1 첫 18세 그룹의 인출 개시, 미인출 시 개인 저축 계좌에 자동 이전(매달 약 5.5만명이 18세에 도달)
- '07~'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11년 제도 종결

* '02.9.1.~'11.1.2. 간 출생자만 수급자로 인정, 이후 출생아는 정부지원 인센티브가 없는 '주니어 개인 저축 계좌(Junior ISA)' 계좌개설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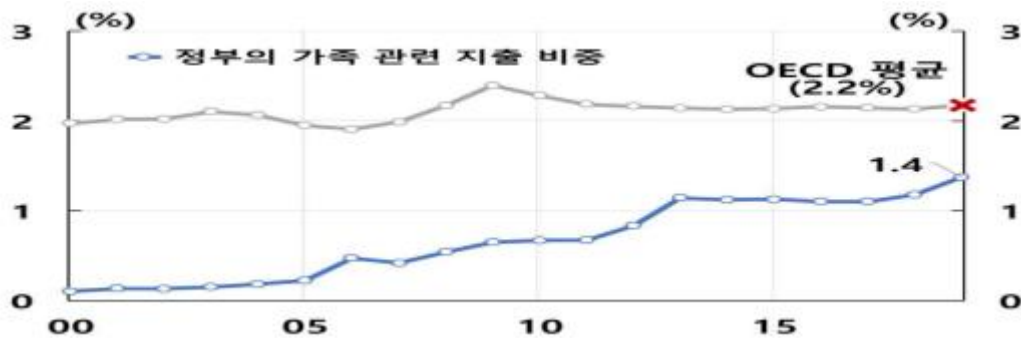
[참고 4] 아동자산형성지원 관련 연구 결과

①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 원인 영향, 대책(한국은행 2023)

- 우리나라 GDP대비 가족관련 정부 지출* 규모(1.4%)를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높일 경우, 합계출산율은 +0.055명 상승

* 가족 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지원 관련 정부 지출 규모('19년 1.37% 20년 1.55% 평균 1.4%)

가족관련 정부 지출(GDP대비)



*자료 : OECD Family DB

- 정책·제도 여건과 경제·사회문화 6가지 여건이 동시에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은 '23년 0.76에서 **+0.845**만큼 상승 예상

정책·제도 여건과 경제·사회·문화 여건이 개선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음

[표 5.3] 정책 시나리오 분석

Scenario #1	[출산율 변화]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지출(1.4%)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증가	0.055
Scenario #2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이 OECD 34개국 평균(61.4주)으로 증가 (법정 가능기간 52주 × 이용률 19.8%) (69.4주 × 88.4%)	0.096
Scenario #3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15-39세, 58.0%)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으로 증가	0.119
Scenario #4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하락 (인구밀도 530.4 × 도시인구비중 81.4%) (122.6 × 77.7%)	0.414
Scenario #5	
한국의 혼외출산비중(2.3%)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으로 상승	0.159
Scenario #6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104)가 2015년 수준(100)으로 하락	0.002
합 계	
Scenario #1-6이 모두 달성되는 경우	0.845

주: 1) () 내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및 OECD 수치(본 모형은 설명변수 변화시 2년 후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
2) 출산율 변화는 '기준모형 추정계수 x (표준화된 OECD 평균 값-한국 값)' 으로 산출

2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 **(현황)**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OECD 중 최하위를 기록
- **(정책 효과분석 226개 기초지자체 대상[2009-2021])**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시 합계출산율이 0.03명 증가하고,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상승시 합계 출산율은 0.098명 증가